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02

발의연월일: 2024. 7. 30.

발 의 자:최형두·엄태영·김예지

최수진 · 김종양 · 김태호

안철수 · 이종욱 · 김장겸

배준영 • 박정훈 • 박충권

윤영석 • 서지영 • 강선영

박성민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국가·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중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육성·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투자활성화 지원,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며 반도체·이 차전지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중국의 핵심광물 및 기술 수출금지 확대 등 주요국의 보호정책은 개별 기업 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어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투자 활성화 지원의 근거가 있음에도 현재 아무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투자 활성화 촉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국가재정법상 설치된 기금 등을 통해 첨단산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활용한 우리나라 수출기 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 2.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2조의2(전략산업등 관련 기업
	에 대한 기금의 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
	에 투자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
	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
	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u>는 기금</u>
	2.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